

-		
	문서번호	BSKS-3-1-76
	제정일자	1992.03.01.
	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	페이지 수	1/8

1992.03.01.제정 2011.12.30.개정 2012.04.09.개정 2012.06.28.개정 2012.11.12.개정 2012.12.26.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사무치

#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(이하 "교직원" 이라 한다.)으로 한다.

제3조(복지항목)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.

- ① 교직원 본인 및 부, 모, 배우자, 직계자녀의 본교 신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100% 면 제<개정 2012.06.28.>.
- ② 교직원 본인의 본교 편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100% 면제<개정 2012.06.28.>.
- ③ 교직원 양가의 부, 모, 배우자, 직계자녀, 형제, 자매의 본교 편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100% 면제<개정 2012.06.28.>.
- ④ 교직원 형제, 자매의 본교 신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 50% 면제<개정 2012.04.09., 2012.06.28.>.
- ⑤ 교직원 형제, 자매 직계자녀의 본교 편입학 시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 50% 면 제<개정 2012.04.09.. 2012.06.28.>.
- ⑥ 교직원 자녀의 중등학교 재학 중 입학금, 수업료 및 운영지원비 지원(단, 정액연봉계약 교원 및 정액연봉계약 직원은 제외함)<개정 2012.06.28.>
- ⑦ 교직원 여가활용을 위해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및 본교 운정연수원 숙박을 이용할 수 있다. 단, 이용금액은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<신설 2012.11.12>.
- ⑧ 교직원 본인 생일에는 생일축하 상품과 생일축하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<신설 2012.11.12>.
- ⑨ 추석명절에 교직원에게 햅쌀을 명절 절찬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<신설 2012.11.12>.
- ⑩ 교직원이 병원 입원시 입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입원격려금은 [별표4]의 기준을 따른다<신설 2012.12.26>.

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8

- 제4조(복지항목의 조정) 제3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 장학금지급 규정에 의거 학생·취업 지도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<개정 2012.11.12>
- 제5조(복지 신청) ①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장학금 신청기간에 교직원의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등록금납입고지서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06.28., 2019.07.16.>
  - ② 제3조 제6항의 경우 "별표1"의 학비보조수당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제3조 제7항의 콘도 이용의 경우 "별표2"의 콘도이용 신청서를 법인사무국에 제출 신청하고, 운정연수원 이용의 경우 "별표3"의 운정연수원 사용 신청서를 사무처에 제출 신청하여야 한다.<신설 2012.11.12>
  - ④ 제3조 제8항 내지 제9항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총장이 따로 지급할 수 있다.<신설 2012.11.12>
  - ⑤ 제3조 제10항의 경우 교직원은 퇴원 후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.<신설 2012.12.26>
- **제6조(비용지급방법)** ① 제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장학금액 확정 후 학비감면으로 일 괄 지급한다.<개정 2012.06.28.>
  - ② 제3조 제6항의 경우 해당 급여일에 교직원 본인에게 지급한다.<개정 2012.06.28.>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교육부 전문81413-236(1998.05.07.)호에 의거 1998년 5월 8일부터 "부산경상전문 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8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8

[별표1] 학비보조수당신청서 <개정 2019.07.16.>

# 학비보조수당 신청서

소 속		성 명	생년월일	
※대상 자녀(중	• 고등학생)			
신청자녀 성명		학교명	학년	
신청자녀 성명		학교명	학년	
신청자녀 성명		학교명	학년	

※ 영수증 붙임			

위와 같이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

신청인:

(인)

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8

[별표2] 콘도이용신청서<신설 2012.11.12.>

# 콘도 이용 신청서

소 속	성 명
이용기간	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( 박 일)
이용인원	명
신청콘도	한화리조트 켄싱턴리조트
신청사유	

위와 같이 콘도이용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인)

학교법인 화신학원 이사장 귀하



거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8

처잣

팀장

운정연수원이용신청서<신설 2012.11.12., 개정 2019.07.16.>

운정연수원 사용 신청서				તે	결		계			팀장			처장	
(개인 및 단체)													(전결)	
성 명 (단체명)										<u>**</u>	실제	사	용자 기기	<u> </u>
주 소							연락 처							
대표자						생년월	일							
사용목적														
사용기간	با 2012	년 월	일	시	~	2012	년	월	일	시	_(	박	일)	
사용인원	계:	명 (일	날반:	명,	대학	생:	명, 중	• 고생	ļ:	명, 유	・초등	생:	명)	
사용시설	○삼성∓ ○일신∓	관: 명, ( 관(인실, 의	○진리관 실, 예실	: , 지실,	명, ( 신설	)지성관 l, 용실,	: 명, 화실):	○행7 명	아관:	명, 〇	)운정관	<u>}</u> :	명	
◆부대시설:														
	수 련 (연 수) 계 획													
일 시 소요시간					수련(연수)내용 장 소				2	비	고			

상기와 같이 운정연수원 사용을 신청합니다.

20 년

사용신청자 :

⑩ 연락처:

운정연수워장 귀하

## 운정연수원 사용 허가서(개인 및 단체)

성 명 (단체명)									- <u>※</u> 실기	세 사용	-자 기	<u>재</u>
대표자												
사용목적												
사용기간	20	년	월	일	시 ~	20	년	월	일	시(	박	일)
사용인원	계:	명	(일반:	명,	대학생:	명,	중ㆍ고생:	명,	유・초등	생:	명)	
사용시설	○일	성관: 신관(인설	명, ○진급 일, 의실, ○	믜관: ᅨ실, 지△	명, ○지성 실, 신실, 용	]관: 실, 화실	명, ○행기 !): 명	자관: 	명, ○운	정관:	명	
	●무	대시설:										

상기와 같이 운정연수원 사용을 허가합니다.

## 운 정 연 수 원 장

**운정연수원**(경남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766번지 은행마을) ☎(055)964-0506~8 / FAX: (055)964-0509 **부산경상대학**(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277-4사무처 장철영) ☎(051)850-1022 / FAX: (051)862-7577



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8

# 운정연수원 이용 각서

본 연수원은 학술연구, 교육 및 심신의 수련장으로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 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는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잘 인지하고 사용에 특별히 유의 할 것을 각서로 서명합니다.

#### \* 아 래 \*

- -.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합시다.
- -. 쓰레기는 분리수거 합시다.
- -. 취사 및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합시다.
- -. 침구 및 비품은 정리정돈 합시다.
- -. 화재예방 및 절전을 생활화합시다.
- -. 음주, 고성방가 등의 민원발생 행위는 일체 하지 맙시다.
- -. 강의용 외는 앰프 사용을 못합니다.
- -. 운동장 사용은 일몰 시까지로 제한합니다.
- -. 주변 마을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,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은 특히 유의합시다.

위 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. (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등은 일체 책임을 지겠습니다.)

20 년 월 일

신청자 성명:

**(FI)** 

운정연수원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76
제정일자	1992.03.01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8/8

[별표4] 교직원 입원격려금<신설 2012.12.26>

# 교직원 입원격려금 지급기준

구 분	입원 격려금	비고
입원 4일 이상 7일 미만	100,000원	
입원 7일 이상	200,000원	

<sup>※</sup> 성형(미용)수술의 경우 입원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